

##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정	1996. 3. 1	조례 제 6호
개정	1996. 9. 9	조례 제 60호
	1998. 9. 11	조례 제 133호(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)
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3. 2. 26	조례 제 419호
	2005. 7. 29	조례 제 600호(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12호
	2009. 4. 24	조례 제 993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2. 14	조례 제1875호
일부개정	2023. 1. 6	조례 제237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9. 4. 24, 2018. 12. 14, 2023. 1. 6>

제1조의2(설치 및 기능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·변경에 관한 사항
2.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사항
3.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
4. 둘 이상의 실·국·소·단이 관련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3. 1. 6]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 12. 14, 2023. 1. 6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8. 12. 14, 2023. 1. 6>

4)

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신설 2018. 12. 14, 개정 2023. 1. 6>

1. 본청의 4급 이상 실·국·단장
2.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,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

④ 위촉위원은 회의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,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. <신설 2018. 12. 14, 개정 2023. 1. 6>

⑤ 지명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용인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<신설 2018. 12. 14, 개정 2023. 1. 6>

[전문개정 2009. 4. 24]

제2조의2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 4. 24]

[전문개정 2018. 12. 14]

제2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·국·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3. 1. 6>

[본조신설 2018. 12. 14]

제3조 삭제 <2018. 12. 14>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8. 12. 14, 2023. 1. 6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4>

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8. 12. 14, 2023. 1. 6〉

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안전번호를 붙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. 〈개정 2018. 12. 14, 2023. 1. 6〉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개정 2018. 12. 14〉

⑥ 삭제 〈2023. 1. 6〉

⑦ 삭제 〈2018. 12. 14〉

[전문개정 2009. 4. 24]

제4조의2 삭제 〈2023. 1. 6〉

제5조(의견 청취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 
〈개정 2023. 1. 6〉

[전문개정 2018. 12. 14]

제6조 [제7조의2로 이동 〈2018. 12. 14〉]

제7조 [제4조의2로 이동 〈2018. 12. 14〉]

제7조의2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 〈개정 2018. 12. 14, 2023. 1. 6〉

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 〈개정 2018. 12. 14, 2023. 1. 6〉

③ 삭제 〈2018. 12. 14〉

[전문개정 2009. 4. 24]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〈2018. 12. 14〉]

[제목개정 2023. 1. 6]

제8조 삭제 〈2018. 12. 14〉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8. 12. 14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9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1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10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3. 2. 2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7. 29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12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99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
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

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  
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④ 「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하고, 제2조의2제1항 중 “4급 각 실·국장”을 “각 실·국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12. 14 조례 제1875호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. 6 조례 제237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